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53
------	------

2021. 9. 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1. 9. 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의승)

1. 제안이유

- 지역상생교류 사업 자문·심의를 위한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일부 미비된 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내용을 추가함(안 제9조).
- 나. 위원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의2).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 라.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의5).
- 마.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6).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나.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운영 현황

-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지역 간 상생교류 협력 촉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자문과 교류협력 사항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²⁾.

1) 종전에는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상생교류 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 기능을 대신하였으나, 상생교류사업의 확대 추세를 감안해 2020년 7월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를 신설하였음.

2)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 간 상생교류 협력의 촉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교류협력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상생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
3. 지역 간 상생협력 위탁 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여(1회 연장 가능) 서울시 관련 실·본부·국장, 시의원, 상생교류 사업 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있음.
 - 현재 위원회는 총 12명(당연직 3명, 시의원 2명,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민간전문가 출신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
- 위원이 최초 위촉된 2020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상생 종합계획 수립방향 및 주요 상생사업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음.

< 위원회 개최 실적 >

연번	개최일자	참석인원	안 건
1	'20.12.15.	10명	·위원장 선출, 지역상생교류사업 보고 및 논의
2	'21.2.3.	7명	·지역상생 종합계획 수립방향 및 주요 상생사업(포럼·박람회) 추진 자문
3	'21.4.12. ~ 4.14.	12명 (서면)	·서울-지방 연계 온라인 방과 후 학습지원 사업 추진 보고 ·'21년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진행경과 보고
4	'21.5.12.	5명	·포럼·박람회 착수보고 발표 및 행사 추진방향 자문

다. 위원회 운영 규정의 보완(안 제9조~안 제9조의6)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는 서울시는 위원회 남설 방지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조례나 규칙 등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7조)³⁾.

- 위원회 필수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목적·기능·성격, 위원의 구성·임기,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존속기한, 회의 소집 시기, 의사·의결정족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등을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조례에서 누락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안 제9조 제3항),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대행(안 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9조의3)와 위원 해촉(안 제9조의4), 위원회 회의(안 제9조의5), 존속기한(안 제9조의6)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 있음.

< 개정안의 규정별 세부내용 >

규정	세부내용
안 제9조③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안 제9조의2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함.
안 제9조의3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p>에서 제척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건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함.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함.
안 제9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촉사유로, ① 위원이 희망한 경우, ② 장기 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사적 이용, ④ 직무 관련 또는 위원직 유직에 부적합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⑤ 제척사유에 해당되어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직무 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함.
안 제9조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회의는 ① 시장의 소집요구, ②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함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안 제9조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현재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임기 등 기본사항을 정하고, 이 외에는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제9조제6항)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관련 필수 규정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위원회에 통용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해촉 등 일반적인 사항까지 모든 조례에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4)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필수규정을 조례에 모두 반영하게 되면 위원회 관련 규정이 과도해지는 결과가 되므로, 개별 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항 이외에는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련 입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집행부 재량권 남용과 의회의 입법심의를 훼손할 수 있어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9조의6 단서를 삭제함(안 제9조의6).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653
----------	---------

제안년월일 : 2021년 9월 6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집행부 재량권 남용과 의회의 입법심의권을 훼손할 수 있어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안 제9조의6 단서를 삭제함(안 제9조의6).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5(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9조의6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9조의5(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u>재적 위원</u>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u>기타 위원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p>② 위원회 회의는 <u>재적 위원</u>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9조의5(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u>재적위원</u>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u>위원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p>② 위원회 회의는 <u>재적위원</u>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9조의6(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p> <p><u>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p>	<p>제9조의6(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p> <p><u><단서 삭제></u></p>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9조의3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5(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6(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u>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9조의2(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u>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신설></u>	<u>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u>
	<u>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u>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p><u><신설>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u> <u>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u>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u> <u>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u> <u>5. 제9조의3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 <u>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p><u><신설> 제9조의5(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u> <u>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u> <u>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u> <p><u>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6(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